

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

2007. 5. 11
[조례 제236호]

일부개정 2011. 1. 7 조례 제 368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 412호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9. 12. 26 조례 제 909호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21. 4. 9 조례 제969호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 <개정 2021. 4. 9>

[전문개정 2019. 12. 26]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

1. 기금은 별표 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,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
2.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,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
3.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

제4조(기금의 수입·지출)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1. 1. 7, 2018. 12. 28>

1. 기금운용관: 환경위생과장
2. 기금출납원: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
-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 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
 2. 기금지급대장(별지 제2호서식)
 3. 현금출납부(별지 제3호서식)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. 7, 2018. 12. 28>

1. 증평군의회의원
2. 환경위생과장
3. 환경 분야 전문가
4.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·면장
5.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

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수립)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기금의 결산보고 등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,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 군수는 기금이 제3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.

제12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. 7 조례 제368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2호 중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⑲ 부터 ㉓ 까지 생략

부칙(2012. 2. 24 조례 제412호,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0 까지 생략

④1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④2 부터 ⑥0 까지 생략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조례 제909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4. 9 조례 제96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(제3조제1호 관련)

사업구분	사업내용	지원사업 세부내용
1. 소득증대 사업	농림수산업시설	공동영농·영어시설(공동영농기계·공동축산·공동어선을 포함한다), 농기구수리시설, 공동양식·양어장, 생산품공동저장소, 공동가공공장, 농업용저수지·농로·임도·농업용수로·농업용양수장·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
	상공업시설	공업용수도·직업훈련소·시장·공용창고·구판장·소규모공단 등
	관광사업시설	휴게소·휴양소·토산품판매장 등
	체육시설	골프장업 및 기타 체육시설업 등
2. 복리증진 사업	건강검진	주민건강진단 등
	사회복지시설	노인회관·마을회관·공중목욕탕·가로등·어린이놀이터·버스승차대기장 등
	도로시설	소규모도로 등
	상하수도시설	상수도시설·하수도시설 등
	교육·문화	도서관·유치원·통학차·문화시설·향토박물관·사적시설·사회교육시설·견학 등
	환경·위생시설	쓰레기처리시설·배수구시설·청소차·공중위생시설·환경감시시설 등
	운동·오락시설	운동장·야영장·운동기구 등
	전기·통신시설	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·텔레비전 방송공동 수신시설 등
3. 육영사업	컴퓨터·피아노 등	교육기자재·학자금 및 장학금지급·장학기금적립·학교급식지원 등
	기타	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와 합의 결정된 사업

[별지 제1호서식]

기 금 관 리 대 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예 금				인 출 (또는 예금해지)		잔 액	비 고
	예금 종류	금 액	이 율	예금기관	적 요	금 액		

[별지 제2호서식]

기금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요	채주	지급액	잔액	비고

